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567호

2027년 농업농촌 현장애로 단기해결 기술개발사업(R&D) 지역주도 문제해결사업 공모계획 공고

농업·농촌 현장의 시급한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R&D 성과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주도로 단기 문제해결형 R&D 추진을 위한 「**농업농촌 현장애로 단기해결 기술개발사업(R&D)-지역주도 문제해결**」사업 공모계획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현장애로 단기해결 기술개발사업(R&D) 추진계획

- 지역주도 문제해결 -

2026. 10.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과학기술정책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 1

Ⅱ. 사업 개요 ····· 1

Ⅲ. 세부 추진계획 ····· 3

Ⅳ. 주요 질의 응답(Q&A) ····· 10

Ⅴ. 향후 계획 ····· 11

붙임1. 후보 과제제안요구서(RFP) 목록 ····· 12

붙임2. 지방정부 참여 신청서 ····· 13

붙임3. 지방비 매칭 확약서 ····· 14

붙임4. 지방정부 세부 추진계획서 ····· 15

붙임5. 연구개발계획서 추가 양식 ····· 23

붙임6.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서 표지 ····· 24

붙임7. 지정공모과제 공개발표평가서 ····· 25

붙임8. 지방정부 연구 컨소시엄 선정 가이드라인 ····· 28

Ⅰ 추진 배경

□ **농업·농촌 현장의 시급한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R&D 성과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단기 문제해결형 R&D 도입 필요**

○ 고령화·인력 부족, 작업 안전 등 현장의 반복적 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장기 기술개발 중심의 기존 R&D 체계로는 현장수요 신속 대응에 한계

○ 이에 농업인·지방정부 등이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기술개발 → 현장 실증 → 적용·확산을 연계하여 **현장 체감 문제해결 R&D 체계 구축**

Ⅱ 사업 개요

<농특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조건	'27년 정부안*	
			단가	예산액
□ 농업농촌현장애로단기해결기술개발				2,625
내역❶ 지역주도 문제해결	지방정부 및 민간 연구팀	국비:지방비(2:1) 매칭 후 100% 출연금 지원	7개×500백만×9/12개월	2,625

* 12월 국회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명)** 농업농촌현장애로단기해결기술개발(R&D)

□ **(사업기간)** 2027년 ~ 2030년(4년)

□ **(사업예산/회계)** '27년 2,625백만원(7과제) / 농특회계

□ **(사업목적)** 농업·농촌 현장의 생활·영농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현장실증을 통해 즉시 적용·확산 가능한 기술성과 창출

□ **(지원조건)** 국비:지방비**(2:1) 비율로 매칭하여** 출연금 지원

□ **(사업시행주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

□ **(지원대상)** 지방정부, 농산업체, 대학, 기업 등

□ **(지원내용)** 지역의 수요를 바탕으로 **과제화**하고, 농업 현장의 반복·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소시엄 기반의 통합형 R&D***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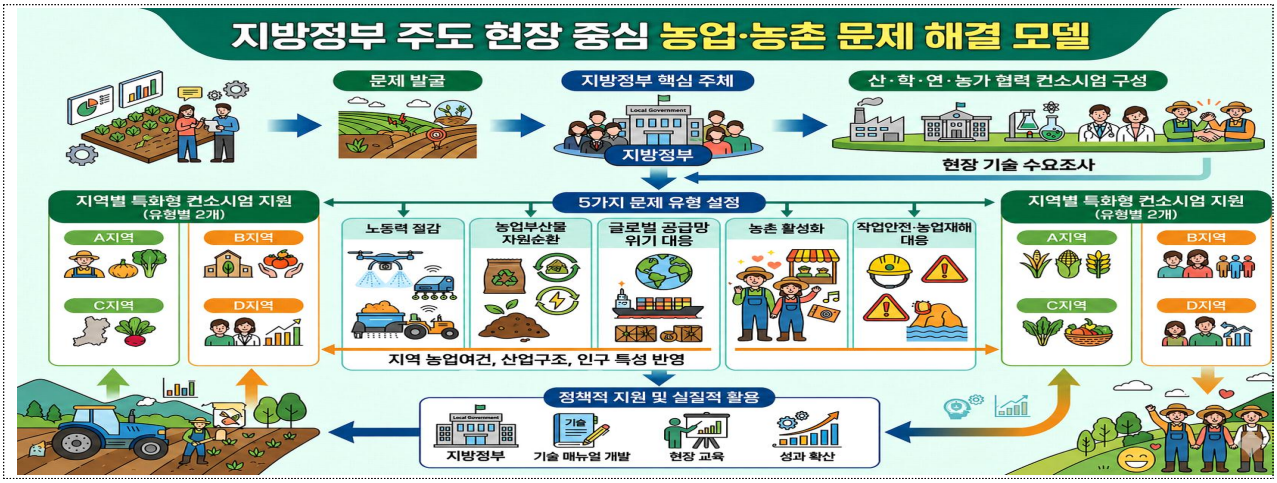
* 지방정부가 농업농촌의 문제를 도출하고, 해당 문제 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팀+적용 농가 등을 포함하여 컨소시엄을 구성

Ⅲ 세부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의 **현장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연구기관, 대학, 농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연구 지원**

* 지방정부 주도로 산·학·연, 농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문제 해결 컨소시엄 지원(7개)



* 기존에 발굴된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연구를 추진하되, 연구 수행 과정에서 신규 현장 문제를 추가 발굴하여 연구 내용에 반영 가능

□ 주체별 역할

◈ 각 참여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현장 문제 발굴부터 개발된 기술의 실증 및 확산까지 단절 없는 **문제해결형 R&D 추진**

○ **(총괄부처**(농식품부)**)** 사업 추진방향 설정, 예산 확보·조정, 전문기관 관리·감독 등 사업 총괄

○ **(전문기관**(농기평)**)** R&D 사업 기획·평가·관리 등 사업 운영, 과제 진도·성과관리 및 현장 R&D 기획·평가단 운영 등

○ **(현장 R&D 기획·평가단**(이하 "현장평가단")**)** 현장 수요 기반 과제 기획, 선정·중간·최종평가 및 과제 진도·성과 점검

○ **(지방정부)** 현장 문제 발굴, 컨소시엄 구성·운영, 연구개발·현장 실증 추진 관리, 지역 내 성과확산 계획 수립·이행

○ **(연구기관·기업 등)**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시제품 제작, 개발 기술의 제품화·고도화 및 현장실증·기술 적용 지원

○ **(실증농가 등)** 영농 애로·기술 수요 제시, 현장 실증 참여 및 적용 가능성 검증, 기술 적용 결과·개선 의견 제공

< 현장 R&D 기획·평가단 > ◈ 현장 수요 기반 과제기획·유형화, 선정·중간·최종평가 실시, 과제의 진도 및 성과 점검 등	
구 분	**주요 역할**
지방정부	**과제 추진 및 참여주체 간 협력 총괄, 연구개발→현장 실증 및 보급→성과확산을 통합 관리** ㅇ 현장 문제 발굴 ㅇ 컨소시엄 구성·운영 및 연구개발 과제 협의 및 조정 ㅇ 연구개발·현장실증 추진 관리 ㅇ 지역 내 성과 확산계획 수립·이행 등
민간 연구기관, 기업 등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수행** ㅇ 기능 개선, 공정 개선, 장비 개발 등 기술개발·시제품 제작 ㅇ 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제품화·고도화 수행 ㅇ 현장 실증 참여 및 기술 적용 지원
실증농가 등	**현장 실증 참여** ㅇ 현장 문제·기술 수요 제시, 실증 참여 및 적용 가능성 검증 ㅇ 기술 적용 결과 및 개선사항 피드백 제공

□ 추진절차 및 추진일정

< 공모 >

10.30.	~11.20.	~11.26.	'26.11.27. ~'27.1.26.	~'27.1.29.	'27.2.~3.	'27.4.
<농식품부> ❶ 지방정부 공모 (RFP 공개)	⇒ <지방정부> ❷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 ❸ 참여후보 지방정부 확정통보	⇒ <지방정부> ❹ 지방정부 컨소시엄 선정·구성	⇒ <지방정부> ❺ 컨소시엄 구성 결과 및 세부 추진계획 제출	⇒ <주관연구기관> ❻ IRIS시스템 사업접수· ❼ 선정평가	⇒ <농기평·지방정부·연구기관> ❽ 협약

❶ RFP 공개('26.10.30.)

○ **(수요조사)** 지방정부 및 대국민 대상으로 지역 내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현장애로를 조사하는 수요조사 추진 완료(3회, 총 79건 접수)

- 첨단기술 활용, 농작업 부담 완화, 기후변화 대응 등 문제유형별로 R&D를 통해 해결이 필요한 현안 문제 제출

○ **(과제기획)** 지방정부 현장 수요, 국민 제안,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평가단**을 통해 현안 문제를 과제화하여 **총 13개 과제제안요구서(RFP) 도출**

- 현장수요를 폭넓게 반영하고, 참여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현장 문제 해결 과제제안서 13개 제시, 이 중 7개 지역(과제) 선정 예정

❷ 〈지방정부〉 사업 참여 신청(~'26.11.20.)

○ **(참여신청)**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과 RFP의 연관성,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참여 신청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2)' 및 '**지방비 매칭 확약서**(붙임3)' 제출(~11.20.)

* 지방비 매칭 확약서는 세부 추진계획 제출 시(~'27.1.29.) 수정 가능

❸ 〈농식품부〉 사업 참여 후보 지방정부 확정(~'26.11.26.)

○ **(후보 지방정부 확정)** 과제별 참여 지방정부 확정 통보(공문, ~11.26.)

* 참여 수요 부족 시 접수 기간 연장 예정

❹ 〈지방정부〉 컨소시엄 선정·구성('26.11.27.~'27.1.26.)

< 연구 컨소시엄 선정·구성 절차 >

① **연구팀 선정 :** 지방정부별 자체 공모를 통해 연구팀 선정(공모 절차 준용)
② **실증지 확보 :** 지방정부의 직접 매칭 또는 연구팀의 구성 시 지역 내 실증지 연계·확보
③ **컨소시엄 구성 :** 선정된 연구팀을 중심으로 참여기관 및 실증 농가(해당시) 간 역할 분담, 세부추진계획 등 협의

○ **(컨소시엄 구성)** 지역 현안 및 RFP 수행에 적합한 **산·학·연 등 민간연구팀을 선정**하고, 농가를 포함하여 **컨소시엄 구성**(~'27.1.26.)

- 지방정부*가 지역문제 및 기술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 컨소시엄 구성**을 주도하고, 자체 선정평가(공모)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 **지방정부(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포함)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연구팀 구성, 지방비 매칭, 현장실증 지원 및 연구성과의 지역 내 활용·확산 등을 주도

**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현장 적용·확산을 위해 연구팀 내 산업체 1개 이상 참여 필수

< 지방정부 연구팀 선정 방안(안) >

- 지방정부는 해당 RFP의 연구개발 목표·내용 및 연구팀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민간연구팀을 **공개 공모를 통해 선정**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신규과제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자격, 참여제한, 평가방식·기준 등 관련 요건*을 충족**

* 공모에 참여하는 연구팀의 참여연구원은 NTIS 및 IRIS(NRI)를 통해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및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 5공)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확인 자료를 지방정부에 제출

* 연구팀 모집·선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평가기준 등은 **[붙임 8] 가이드라인 참고**

❺ 〈지방정부〉 컨소시엄 구성 결과 및 세부 추진계획서 제출(~'27.1.29.)

○ **(참여신청)** 과제 수행 필요성, 컨소시엄 구성 및 절차, 성과 활용계획 등 '**세부 추진계획서**(붙임4)', '**지방비 매칭 확약서**(붙임3)' 제출(~'27.1.29.)

- 연구개발성과*가 지역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컨소시엄 내 역할 분담** 명확화 및 협력체계(협의회 추진) 지속 운영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귀속에 관한 사항을 3자 협약 시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공공목적 연구성과 지속 활용을 위한 성과물 귀속 및 지식재산권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마련

** (연구팀)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 및 현장 실증 수행, (지방정부) 지방비 매칭, 실증환경 제공, 행정적 지원 및 연구 성과의 지역 내 적용·확산 등을 지원

❻ 〈주관연구기관〉 사업시행 공고 및 접수('27.1월~2월)

◈ 지방정부의 컨소시엄 구성 결과 및 세부 추진 계획 제출과 별도로, **주관연구기관의 과제 접수하고 이후 선정평가 절차 추진 예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제4항에 따른 공모·선정 절차 이행을 위해 **주관연구기관이 IRIS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 **(공고)** RFP, 연구개발 목표·내용, 지원규모·기간, 신청자격, 연구팀 구성요건 및 선정평가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공고('27.1월)

- 지방정부가 사전에 구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한 컨소시엄을 신청 대상으로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신청하도록 안내
- 국비:지방비(2:1) 매칭 조건, 지방정부와 연구팀의 역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귀속 및 활용, 기업부담금*, 기술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지원되는 국비·지방비를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매칭

** 기술료 징수·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

○ **(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붙임5)와 지방정부의 세부 추진계획서 등 필수서류를 IRIS에 제출(~'27.2월)

○ **(사전검토)** 신청자격, 연구팀 구성요건 및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선정평가 대상 확정

- 지방정부가 기 제출한 사업참여 내용 등과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팀 구성 등의 일치 여부 확인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연구팀 구성요건 미충족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재공고)** 지방정부 참여신청 및 참여후보 확정 통보 후 진행하는 공고이므로, **과제별 단독 접수 시 별도의 재공고 없이 선정평가 실시**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2조제4항에 따른 재공고는 임의사항으로, 단독접수 과제도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 적정성 및 과제 수행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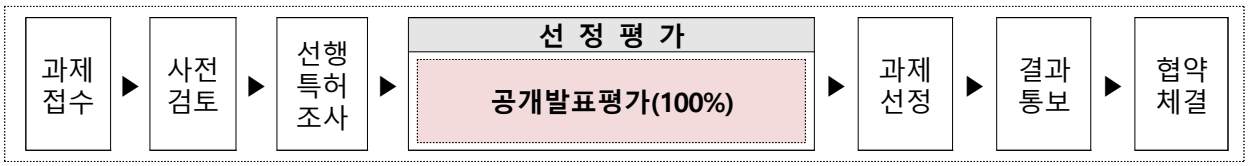
[연구팀 필수 제출서류(안)]

구분	제출서류	작성·발급 주체	주요내용
1	연구개발계획서	연구팀	연구목표·내용, 추진체계, 연구비 등
2	지방정부 참여 신청서 및 후보 확정 공문	지방정부	사전 참여 신청 여부 확인
3	지방비 매칭 확약서	지방정부	선정 시 지방비 매칭·부담 확약
4	지방정부 세부추진계획서	지방정부	성과의 현장 적용·활용 확산계획 등
5	기타 서류	연구팀	기타 별첨서류 및 증빙 제출

❼ 〈지방정부+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27.3월)

○ **(평가방식)** 지방정부 매칭형 R&D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서면평가 없이 **공개발표평가(100%)로 선정평가 실시**

- 접수과제가 선정 예정 과제수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한 평가방식 적용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원계획은 제출된 지방정부 세부 추진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



○ **(평가내용)** 기존 농림식품 R&D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를 활용하되, 연구개발비 편성 합리성 및 **지역주도 문제해결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 지방정부 및 연구개발기관이 제안한 연구개발 내용과 연구비 편성 규모가 적정한지 중점 평가하며, 필요시 연구내용 및 기술적 보완 방안을 추가 제시
- 지정공모과제 공개발표평가서(붙임7)의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평가' 항목에 **지방정부 세부 추진계획 적정성을 반영**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안)]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지방정부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 현장실증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연구성과의 지역 내 적용·활용 및 확산계획의 구체성과 지속 가능성 • 지방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계획의 적정성

○ **(평가위원)** 과제 기획부터 평가·성과관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단을 활용**하여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최종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우선순위, 평가의견 및 지원 가능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 최종 선정결과를 지방정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고, 평가·조정 의견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보완* 요청

* 연구개발 목표·내용 및 연구개발비 등은 평가 의견에 따라 조정 가능

❽ 협약체결('27.4월)

○ **(협약준비)** 최종과제의 평가·조정 의견을 반영한 연구개발계획서 보완 및 지방비 확보 여부, 참여기관별 역할·연구비 부담 계획 등 확인

○ **(협약체결)**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농기평·지방정부·연구개발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 지방정부는 오프라인 서명 절차에 참여하고, 협약서에 연구수행, 지방비 부담, 현장실증 지원 및 성과 활용·확산 등 주체별 역할과 이행사항 명시

○ **(연구비 부담) 국비와 지방비는 2:1 비율로 매칭**하고, 영리기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부담

[연차별 과제당 지방비 매칭 금액]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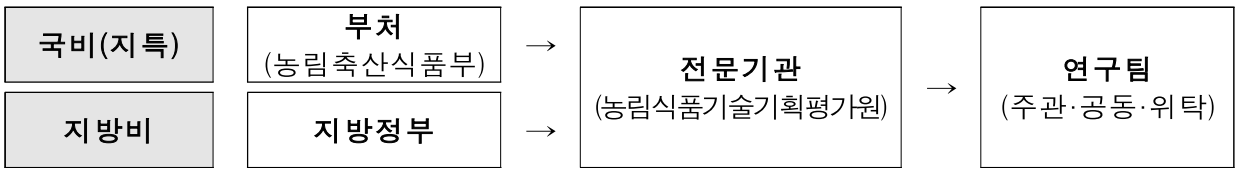
구분		1차년도(9m)	2차년도(12m)	3차년도(12m)	합계
1년 9개월	국비	375	500	-	875
	지방비	**187.5**	**250**	**-**	**437.5**
	합 계	**562.5**	**750**	**-**	**1,312.5**
2년 9개월	국비	375	500	500	1,375
	지방비	**187.5**	**250**	**250**	**687.5**
	합 계	**562.5**	**750**	**750**	**2,062.5**
* 상기 금액은 국비·지방비 기준이며, 영리기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선정 후 별도 산정					

- 제출한 지방비 매칭 확약서에 기입된 입금확약일에 맞춰 전문기관 사업 담당자가 입금 안내 예정('27.4월)

- 지방비는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상반기 이내 일시납 권장***

* 단, 지방정부 사정으로 일시납이 어려울 경우 '분할교부 계획' 제출 후 분할교부가 가능하나 상반기 이내에 모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구개발비 지급 체계>



○ **(성과 소유·활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정부와 연구개발기관 간 사전 협의내용을 최종 확인하여 협약서에 반영

- 연구개발성과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소유, 국가소유로 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

* 현장실증을 위해 설치·구축되는 유형적 성과물의 소유·관리주체 및 연구개발 종료 후 활용방안, 지방정부의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에 협의

[3자 협약 내용(안)]

①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 및 지식재산권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증을 위해 지방정부 관할지역에 설치·구축된 시설·시스템 등 **유형적 성과물의 소유·관리 및 연구개발 종료 후 활용에 관한 사항은 성과물의 특성 및 지속적인 활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약에서 정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지역 내 적용·확산을 위해 지방정부가 해당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 부여 등 필요한 조치에 협조**한다.

* 협약서 양식(예시)은 붙임 6 참고

□ 전주기 사업 프로세스

추진절차		수행내용	주체
사업기획·수요조사	농업농촌 문제발굴	- 고령화·인력부족·작업 안전 등 단일 기관·단일 기술로 해결 불가, 지역 여건별 맞춤 대응이 필요한 현장 문제 발굴 - 현장문제 발굴,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5개 문제 유형을 발굴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 제시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지방정부 수요조사	- 농업농촌현장애로단기해결기술개발사업 참여 지방정부 수요 발굴(지방정부→농식품부 수요조사서 제출)	농식품부
과제기획	수요 취합	- 지방정부 수요 기반 최종 문제 유형 확정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과제 기획	- 현장 R&D 기획평가단이 확정된 문제 유형에 대해 신규과제 기획(RFP 도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과제확인	문제 유형 확인 및 사전 신청	- 최종 도출된 문제 유형 확인(농식품부에서 안내 예정) 및 사업참여 여부 공문(지방정부 참여 신청서) 회신 - 농식품부는 지방정부 참여 확인서 발급	지방정부 농식품부
신청준비	컨소시엄(연구팀) 구성 및 신청	- 문제 유형 해결에 적합한 지역 내 대학·출연연·기업 등과 컨소시엄 구성(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준으로 선정) - 세부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공문으로 최종 참여 신청	지방정부
사업관리	선정 공고·접수	- 지원대상 사업 컨소시엄(연구수행기관) 공고 및 접수 * IRIS를 통해 주관기관이 신청, 지방정부는 성과활용계획 제출	농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기관 선정평가	- 전문분야별 사업 선정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산·학·연 전문가, 현장 R&D 기획평가단 참여 필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협약체결	- 선정된 연구기관과 연구개발 협약체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주관연구기관·지방정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비 지급	- 선정된 연구기관에 연구개발비 지급 * 출연금:지방비=2:1 비율로 매칭하여 지방비 교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지방정부)
	연구개발 수행	- 지방정부·주관연구기관 책임하에 사업 수행 * 현장애로 문제 발굴, 컨소시엄 구성·운영 총괄, 연구개발·현장 실증 관리 및 지역 내 성과확산 계획 수립 등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지방정부)
	연차·최종평가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실적,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 평가(산·학·연 전문가, 현장 R&D 기획평가단) - 평가단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종합점수 및 등급 결정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지방정부)
	정산,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처리 - 기술료 징수, 성과활용 확산 추적관리 등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Ⅳ 주요 질의 응답(Q&A)

Q1.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수행기관으로 참여 가능한지?
A1. 이 사업은 민간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농업·농촌 현장에 맞게 적용 및 확산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는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연구개발사업 주도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Q2. 사업 신청을 시·도에서 총괄로 해야 하는지 각 시·군·구에서 해도 되는지?
A2. 지방정부의 여건에 따라 각 시·도에서 시·군·구를 총괄해서 신청해도 되며, 시·군·구가 개별 신청도 가능 * 시·도가 예산을 편성하여 매칭 가능
Q3. 여러 개 시·군이 연합해도 되는지?
A3. 복수의 **시·군 등이 연합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비 부담 비율(국비 2 : 지방비 1)은 참여 지방정부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신청** * 예를 들어, 1번 과제에 핵심성과 목표에 실증건수가 3건인데, 이 건수 내에서 시·군을 나눠서 수행하는 거라면 지방비를 동일 비율만큼 나눠서 매칭/ 원하는 실증 건수가 각 시·도에 적용하는 경우 각각 지방비 납부
Q4. 지방정부 예산 편성 시 비목은?
A4. 지방정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308-13(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 할 것을 추천드리고, 각 기관 예산실과 협의하여 실정에 맞게 편성 가능 * 지방정부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농기평에 교부 필요
Q5. 수요 조사 시 제출한 지방정부만 해당 과제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A5. 공개된 13개 RFP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현장문제 과제에 신청 가능. 기술개발 역량, 현장 확산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지방정부 컨소시엄을 선정할 예정

V 향후 계획

□ **(지방정부 → 농식품부)** 지방정부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11.20.)

□ **(농식품부 → 지방정부)** 사업 참여 후보 지방정부 확정(~11.26.)

□ **(지방정부별 컨소시엄 구성)** 연구팀 선정(~'27.1.26.)

□ **(지방정부 → 농식품부)** 컨소시엄 구성 결과, 세부 추진계획서 및 지방비 매칭 계획서 등 서류 제출(~'27.1.29.)

□ **(농기평)** '27년 신규과제 공고(본공고, IRIS 시스템)('27.1.)

□ **(주관연구기관 → 농기평(IRIS))** '27년 신규과제 접수(~'27.2.)

○ 지방정부에서 선정한 주관연구기관이 IRIS 시스템에서 사업 신규과제 접수 신청

□ **(농기평)** 선정평가 실시('27.2.~3.)

□ **(농기평·지방정부·연구팀)** 3자 협약 체결('27.4.)

붙임 1 과제제안요구서(RFP) 목록

□ 지방정부 참여 과제제안요구서(RFP) 목록

구분	과제명	연구 기간 (총 사업비(국비))
1	시설 농업 설비 안전사고 예방장치 현장실증	1년 9개월 (875백만원)
2	데이터 기반 AI 공동영농 작업·경영지원 및 농기계 공동활용 플랫폼 개발	1년 9개월 (875백만원)
3	축산농장 위험감지·방역 및 현장관리 통합기술 개발·실증	1년 9개월 (875백만원)
4	시설원예 농가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솔루션 개발 및 현장 실증	2년 9개월 (1,375백만원)
5	축산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솔루션 개발 및 현장 실증	2년 9개월 (1,375백만원)
6	밭작물 폐비닐 문제 해결을 위한 친환경 액상멀칭 소재 및 자동화 도포 시스템 개발	2년 9개월 (1,375백만원)
7	드론 항공방제 시 비산 및 약제혼용 위험 방지를 위한 작업이력 추적	1년 9개월 (875백만원)
8	미생물 기반 병해충 방제 소재 현장 실증 및 농가 보급 모델 구축	1년 9개월 (875백만원)
9	수요 맞춤형 저투입 과수 생산·수확후 품질관리 모델 개발 및 실증	2년 9개월 (1,375백만원)
10	농작업 편의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기술 현장실증	1년 9개월 (875백만원)
11	인삼 해가림시설 구조 자재 경량화 및 설치·관리 생력화 기술 개발	1년 9개월 (875백만원)
12	버섯 폐배지 기반 생분해성 친환경 포장재 개발 및 자원순환 모델 구축	1년 9개월 (875백만원)
13	지역 농식품·생물자원 부산물의 고부가 자원화 및 순환이용 기술개발·실증	2년 9개월 (1,375백만원)

* 과제별 세부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현장애로 단기해결 지역주도 문제해결 후보 과제제안요구서(RFP)] 파일 확인

붙임 2	지방정부 사업 참여 신청서

지방정부 사업 참여 신청서

□ 신청 개요

사업명	농업농촌현장애로단기해결기술개발	
신청과제	*1-1. OOOO 기술개발*	
신청기관	*(예시) 전남 나주시 또는 전남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등*	
담당자 *(팀장/계장급)*	(담당자명)	(부서/직급)
	(전화번호)	(전자우편)
지방비 매칭 예정액	*000,000,000원(국비:지방비 = 2:1 매칭 기준)*	
총 연구개발기간	*0000.00.00. ~ 0000.00.00.*	

□ 지역 현안 및 사업 참여 필요성

신청 과제와 관련된 지역 현안 및 문제점, 연구개발을 통한 해결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2027년도 농업농촌현장애로단기해결기술개발사업에 참여를 신청하며, 선정될 경우 지방정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연구팀과 협력하여 과제를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 ○ 광역시장·도지사 ○ ○ ○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붙임 3	지방비 매칭 확약서

지방비 매칭 확약서

□ 사업 개요

사업명	농업농촌현장애로단기해결기술개발		
지방정부명 담당자	*(예시) 전남 나주시*		
	(담당자명)	(부서/직급)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과제명	*1-1.OOOO 기술개발*		
예산 편성 비목	*308-13(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당해연도 지방비	*000,000,000원*	입금확약일	*2027.00.00.*

□ 사업비 출연 · 출자 내역

구 분	납입금액 (백만원)					비 고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총계	
국 비	*0,000*	*0,000*	*0,000*	*0,000*	*0,000*	
지방비						
합 계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국비에 대한 지방비를 상기와 같이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 ○ 광역시장·도지사 ○ ○ ○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붙임 4 지방정부 세부 추진계획서

세부 추진계획서 작성 요령

□ 작성 목적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의 **지역 현안, 현장실증 지원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확산 계획 등을 확인**

□ 작성 요령

○ 각 항목별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지역의 실제 현황 및 해당 RFP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핵심내용 중심으로 작성**

- 연구개발의 세부적인 목표·내용 및 수행방법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하고, 본 계획서에는 **지방정부의 역할 및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작성**
- 통계자료, 현장사례, 농업인·농산업체 의견 등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시

○ 작성 예시는 참고용으로, **예시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여건 및 해당 RFP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

○ 지방정부의 역할 및 지원·활용계획은 **실제 추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계획서와의 **중복 작성은 지양**하며, 필요시 작성내용에 따라 표·그림 등을 활용하거나 작성공간 조정 가능

□ 문의처

기관	담당자	연락처	e-mail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소연 주무관**	044-201-2458	young454@korea.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융복합사업실 **양지우 연구원**	061-338-9769	jiwoo1026@ipet.re.kr

[표지 서식]

농업농촌현장애로단기해결 기술개발사업 세부 추진계획서

2026. 00.

지방정부명

담당과

Ⅰ. 사업 개요

1. 신청 개요

사업명	농업농촌현장애로단기해결기술개발		
내역사업명	지역주도 문제해결		
신청과제	*1-1. OOOO 기술개발*		
신청기관	*(예시) 전남 나주시 또는 전남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등*		
담당자	(담당자명)	(부서/직급)	
	(전화번호)	(전자우편)	
지방비 매칭 예정액	*000,000,000원(국비:지방비 = 2:1 매칭 기준)*		
총 연구개발기간	*0000.00.00. ~ 0000.00.00.*		
주관연구개발기관	*OO대학교, OO기업 등*	연구책임자	*OOO*

2.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 지방정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실증농가·농산업체 등 주요 참여주체 간 협력관계 및 역할을 도식화하여 제시

□ 기관별 주요 역할

구분	기관명	주요 역할
지방정부	*OO시, 농업기술센터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OO대학교*	·
공동연구개발기관	*OO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OO연구소*	·
기타(실증농가 등)	*OO농가*	·

【작성방법】 ※ 제출 시, 작성 방법은 삭제
- 지방정부와 연구팀 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작성
- 연구개발 내용은 연구개발계획서와 중복하여 작성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지원 역할을 중심으로 작성

Ⅱ. 세부 추진계획

1. 지역 현안 및 사업 추진 필요성

□ 지역 현안

○ *함초롱바탕 15p*

- *함초롱바탕 15p*

* *맑은고딕 12p*

□ 사업 추진 필요성

○

-

*

【작성 방법】 ※ 제출 시, 작성 방법 및 예시는 삭제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현재 지역 농업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 해당 문제로 **어떤 농업인·농가·농산업체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 문제가 **얼마나 자주 또는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하는지**
- 현재는 해당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해결하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 해당 RFP의 기술개발 및 현장실증이 **우리 지역의 문제해결에 왜 필요한지**

※ 통계자료, 피해사례, 농업인 건의사항 등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간략히 제시

【작성 예시】

○ 우리 지역은 사과 주산지로, 대과·고품질 생과 생산을 위해 적과·방제·수확 등에 많은 노동력과 농자재가 투입되고 있어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에 따른 농가의 생산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 소비환경 변화에 따라 중소과 및 가공용 사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적합한 별도의 생산체계가 부족한 상황
- 이에 노동력과 농자재 투입을 줄일 수 있는 스낵·가공용 사과 생산기술을 지역 농가에서 실증하여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가공업체 등과 연계한 새로운 소득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작성 예시는 참고용이며, 예시를 단순 인용·반복하기보다 지역의 실제 현황 및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지방정부 역할 및 현장실증 지원계획

□ 지방정부의 역할

○

–

*

□ 현장실증 지원계획

○

–

*

【작성방법】 ※ 제출 시, 작성 방법 및 예시는 삭제

○ 연구개발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술내용을 작성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연구팀이 지역에서 원활하게 연구·실증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를 작성해 주세요.

- 연구개발 및 실증을 담당할 **농가·농산업체·시설 등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 실증장소 확보, 농가 협조 등 **현장실증을 위해 지원할 사항**
- 관련 부서·농업인·유관기관 등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 연구·실증 과정에서 농업인의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어떻게 듣고 연구팀에 전달할 것인지**

【작성예시】

○ 관내 사과 재배농가 및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스낵·가공용 사과 생산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실증농가 및 과원을 확보하고 연구팀의 현장실증을 지원

- 연구팀과 실증농가 간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
- 생산된 사과의 가공 가능성 및 판로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사과 가공업체 등과 연계하고, 실증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 애로사항을 연구팀과 공유

※ 작성 예시는 참고용이며, 예시를 단순 인용·반복하기보다 지역의 실제 현황 및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연구개발성과 활용 · 확산계획

□ 지역 내 적용 · 활용계획

○

–

*

□ 성과 보급 · 확산계획

○

–

*

【작성방법】 ※ 제출 시, 작성 방법 및 예시는 삭제

○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가정했을 때, **개발된 기술을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작성해 주세요.

- 개발된 기술을 **어떤 농가·품목·지역 등에 적용할 계획인지**
- 실증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농업인에게도 **어떻게 알려주고 보급할 것인지**
- 현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지원사업·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지**
- 필요한 경우 향후 **신규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작성예시】

○ 현장실증을 통해 효과가 확인된 저투입·저노동 사과 생산기술을 관내 사과 재배 농가에 적용하여 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 추진

- 농업인 교육·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실증결과와 재배방법을 공유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적용 확대
- 스낵용 사과는 새로운 지역 농산물로 생산·유통하고, 가공용 사과는 지역 가공업체와 연계하여 원료로 활용하는 등 생산·가공 연계방안 추진
-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농가 수요 등을 바탕으로 기존 농업 지원사업과의 연계 또는 신규 지원방안 검토

※ 작성 예시는 참고용이며, 예시를 단순 인용·반복하기보다 지역의 실제 현황 및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연구개발 종료 후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

–

*

【작성방법】 ※ 제출 시, 작성 방법 및 예시는 삭제

○ 연구개발이 종료된 이후에도 **개발된 기술이나 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어떻게 계속 활용할 것인지**를 작성해 주세요.

- 실증에 사용한 시설·장비·시스템 등을 **누가, 어떻게 활용·관리할 것인지**
- 개발된 기술을 지역 농업현장에 **계속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 지방정부의 기존 사업과 연계하거나 후속사업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향후 검토·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작성할 수 있음

【작성예시】

○ 연구개발 종료 후에도 실증농가를 중심으로 개발된 스낵·가공용 사과 생산기술을 지속 활용하고, 지역 내 적용농가 확대 추진

- 실증에 활용된 시설·장비 등은 해당 농가·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활용·관리하고, 필요시 지방정부에서 운영현황 등을 확인
- 농가와 지역 가공업체 간 생산·공급 연계를 지속하고, 연구개발성과 및 농가 수요를 바탕으로 관련 지방정부 지원사업과의 연계 또는 후속 지원방안 검토

※ 작성 예시는 참고용이며, 예시를 단순 인용·반복하기보다 지역의 실제 현황 및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1] 연구팀 선정 가이드라인 준수 확인서

연구팀 선정 가이드라인 준수 확인서

□ 기본 개요

사업명	농업농촌현장애로단기해결기술개발		
내역사업명	지역주도 문제해결		
신청과제	*OOOO 기술개발*		
지방정부	*(예시) 전남 나주시 또는 전남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OO대학교, OO기업 등*	주관연구책임자	*OOO*
공동연구개발기관	*OO대학교, OO기업 등*	공동연구책임자	*OOO*

□ 연구팀 선정기준 준수 여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공고에 제시된 연구팀 선정기준 및 참여조건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확인사항	확인
선정절차	공고에서 정한 연구팀 모집·선정 절차에 따라 연구팀을 선정하였는지	✓
참여자격	연구팀을 구성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공고에서 정한 참여자격을 충족하는지	✓
구성요건	RFP에서 정한 연구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
산업체 참여	연구팀에 산업체가 1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지	✓
참여제한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기관 등 공고에서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를 제한한 기관이 연구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등은 지방정부 역할만 가능	✓

위와 같이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공고에 제시된 연구팀 선정기준 및 참여조건 등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연구팀을 선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광역시장·도지사 ○ ○ ○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붙임 5 연구개발계획서 추가 양식

*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은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별지 제3호 서식] 활용

<table>
<tr><td>과제(공고)번호</td><td colspan="7"></td></tr>
<tr><td>지방정부명</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2">과제명</td><td>국문</td><td colspan="6"></td></tr>
<tr><td>영문</td><td colspan="6"></td></tr>
<tr><td>주관연구개발기관</td><td>기관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관연구책임자</td><td>성명</td><td colspan="2"></td><td>전자우편</td><td colspan="2"></td></tr>
<tr><td>총 연구기간</td><td colspan="7">YYYY.MM.DD ~ YYYY.MM.DD (개월)</td></tr>
<tr><td>해당연도 연구기간</td><td colspan="7">YYYY.MM.DD ~ YYYY.MM.DD (개월)</td></tr>
<tr><td rowspan="2">연구개발비</td><td>국비</td><td>천원</td><td rowspan="2">민간</td><td rowspan="2">천원</td><td rowspan="2">계</td><td rowspan="2">천원</td></tr>
<tr><td>지방비</td><td>천원</td></tr>
<tr><td>실무담당자</td><td>성명</td><td colspan="2"></td><td>전자우편</td><td colspan="2"></td></tr>
<tr><td>연구 요약
(연구 주제, 목적/목표, 필요성, 내용, 독창성, 과학·기술적 의미, 영향 등)</td><td colspan="7"></td></tr>
<tr><td>차별화 전략
(타 연구와의 차별성 제시)</td><td colspan="7">○ 기존 수행되고 있는 다른 국가연구개발과제, 기존 기술·제품과의 차별성 제시
– 과제 중복인 경우, 기존 과제의 문제 해결의 애로사항 및 차별점 제시
○ 기존 성과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한 현장 적용·개선·고도화 방안 제시</td></tr>
</table>

붙임 6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서 표지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중앙행정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기관명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명	농업농촌현장애로단기해결기술개발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		
연구개발과제명			
지방정부명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
		연구개발과제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명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명		책임자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개월)
	단계	1	YYYY. MM. DD – YYYY. MM. DD(개월)
		2	YYYY. MM. DD – YYYY. MM. DD(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비	지방비			기타()					
		현금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00.00~'00.00)										
	2년차('00.00~'00.00)										
2단계	1년차('00.00~'00.00)										
	2년차('00.00~'00.00)										
	n년차('00.00~'00.00)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기관, 지방정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연 구 책 임 자 : 소속 : 성명 :

[협약 당사자]

전문기관의 장	(성 명)	직 인
지방정부의 장	(성 명)	직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성 명)	직 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성 명)	직 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성 명)	직 인

붙임 7 지정공모과제 공개발표평가서

■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별지 제9호 서식] <제13조 관련> (3쪽 중 1쪽)

지정공모과제 공개발표평가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 . .**

사 업 명				
연 구 과 제 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평 가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1. 종합평가(점수제)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점 수
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	1) 연구목표의 정량성 및 명확성 ·양적, 질적 연구성과 목표의 적절성	0 1 2 3 4 5
	2)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충실성・체계성・창의성	0 1 2 3 4 5
기술개발 수행능력	3) 사전 관련기술 및 정보조사의 충실도 (선행연구결과 확보, 관련특허, 논문 및 시장분석정도)	0 1 2 3 4 5
	4) 연구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기반 확보수준	0 1 2 3 4 5
	5)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0 2 4 6 8 10
기술개발 추진전략	6) 기술개발 방법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전략의 명확성, 적정성, 합리성	0 1 2 3 4 5
	7) 연구팀간의 연계성, 추진전략의 합리성	0 1 2 3 4 5
	8) 기술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0 4 8 12 16 20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9) 실용화·산업화 전략의 구체성	0 2 4 6 8 10
	10)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 ·실용화・산업화 가능성 ·기술의 혁신성 ·경제・사회・지역적 파급효과 ·기업의 재무안정성 등 연구개발 성공 가능성	0 2 4 6 8 10
사업 및 평가의 특성	11) 사업 및 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 현장실증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연구성과의 지역 내 적용·활용 및 확산계획의 구체성과 지속 가능성 · 지방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계획의 적정성	0 4 8 12 16 20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조정의견(연구내용, 연구팀 등)

2-1. 보완사항

2-2. 연구성과목표 가중치의 적정성 검토의견

성과목표	사업화지표												연구기반지표								
	지식재산권				기술실시(이전)		사업화					기술인증	학술성과				교육지도	인력양성	정책활용·홍보		기타(타연구활용등)
													논문		논문평균IF	학술발표					
	특허출원	특허등록	품종등록	SMART	건수	기술료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투자유치		SCI	비SCI					정책활용	홍보전시	
단위	건	건	건	평균등급	건	백만원	건	백만원	백만원	명	백만원	건	건	건		건		명	건	건	
신청내용																					
적정수준																					

3. 유사·중복 조정의견

4.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연구기간 적정성 검토의견

구 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년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연구기간
신청내용	천원	천원	년
적정수준 검토	천원	천원	년
의견			

5. 보안등급 분류

5-1. 보안등급 분류

연구책임자 신청 시 보안등급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검토 결과	□ 보안과제 □ 일반과제

5-2. 보안등급 검토의견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붙임 8 지방정부 연구 컨소시엄 선정 및 구성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은 지방정부의 연구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관련 법령 및 필수 요건을 준수(참여제한, 3책5공 확인 등)하는 범위에서 세부 선정절차와 평가방법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Ⅰ 총 칙

❶ 목 적

□ 가이드라인 마련 목적

○ 지방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컨소시엄 모집·선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기준 제시

○ 지방정부별 연구팀 선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 확보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적합한 연구 컨소시엄 선정 지원

○ 연구팀 공개모집부터 신청자격 검토, 선정평가, 결과 통보 및 관련 자료 관리까지 지방정부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안내

❷ 적용 범위

□ 적용 대상

○ 농업농촌현장애로단기해결 기술개발 사업(R&D) 지역주도 문제해결 내역사업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정부

○ 지방정부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공개모집하는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연구원

□ 적용 사항

○ 연구 컨소시엄 공개모집 및 신청서류 접수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신청자격·참여제한 검토

○ 연구팀 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

○ 연구팀 선정 관련 증빙자료 관리 및 전문기관 제출

❸ 기본 원칙

□ 공개경쟁을 통한 연구팀 선정

○ 지방정부는 해당 RFP의 연구개발 목표·내용 및 연구팀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연구팀을 공개 공모를 통해 선정

○ 특정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유리한 모집조건 설정 및 사전 내정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 공개모집 시 신청자격, 제출서류,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등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

□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 연구팀 모집·선정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등 관련 법령 및 신규과제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자격, 참여제한 등 필수 요건 준수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세부 내용은 [별첨 1] 참고

○ 연구팀 공개모집, 선정평가 및 결과관리 등 지방정부 자체 선정 절차는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하되,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해당 규정 적용

□ 선정절차의 공정성 확보

○ 연구팀 선정 시 지방정부 여건에 따라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평가 실시 가능

○ 평가위원과 신청 연구팀 간 이해관계 여부 사전 확인 및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조치

○ 사전에 안내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의 객관적 관리

Ⅱ 기본 사항

❶ 연구 컨소시엄 구성

□ 구성 원칙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실증·성과활용 역량을 갖춘 연구개발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

○ 산업체의 필수 참여를 통한 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 및 사업화 연계·확산 촉진

○ 연구개발기관별 전문성 및 수행역량을 고려한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

○ 지방정부 연구개발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참여 제한

○ 동일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중복 구성 제한

□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지방정부		• 지역 현장애로 및 기술 수요 발굴 • 연구팀 공개모집 및 선정절차 운영 •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실증을 위한 행정적 지원 • 실증 대상지역 및 참여 농가 등 협력체계 구축 •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확산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
연구기관	주관	• 연구개발과제의 총괄 수행 및 연구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운영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간 업무 조정 및 연구개발 성과관리 • 연구개발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관리 및 연구개발 관련 보고서 작성 • 현장 실증 및 연구성과 활용·확산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공동	• 기관별 전문분야에 따른 세부 연구개발 수행 •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적 검증 및 현장 적용 지원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확산을 위한 기술 고도화
	위탁 (필요시)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수행 • 위탁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결과물 도출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성과 제공

❷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지방정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는 제외)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❸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 참여제한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4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6개로 제한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까지 다음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불이행
- 기술료 납부 불이행
- 정산금 또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납부 불이행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 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과제구성 제한**

○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확인방법**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NTIS 및 IRIS(NRI)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및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해당 여부 확인

* NTIS 및 IRIS(NRI)를 활용한 세부적인 확인 방법은 [별첨 2] 참고

○ 연구팀은 참여연구원별 확인자료를 취합하여 지방정부에 제출

○ 지방정부는 제출된 확인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확인자료의 불명확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 연구팀에 보완자료 제출 요청

Ⅲ 연구 컨소시엄 선정 절차

※ 지방정부는 연구 컨소시엄 선정 절차를 농기평과 협의 가능

❶ 선정계획 수립

□ 선정계획 수립

○ 지방정부는 연구팀 공개선정에 앞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및 추진일정을 고려한 선정계획 수립

※ 지방정부에서는 13개 과제별 제시된 연구기간(1년9개월, 2년9개월) 및 지원 예산에 맞게 연구개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연구팀이 연구내용 및 기술적 보완 방안을 추가 제시하여 연구비 편성 규모가 적정한지 중점 평가하여야 함

❷ 선정 공고

□ 공고방법

○ 지방정부 홈페이지 등 일반 연구개발기관 및 기업이 접근 가능한 공개 매체를 통한 모집 공고

○ 관련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대한 공고문 안내 등 참여기회 확대

○ 공개선정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문 및 게시 증빙자료 보관

□ 공고기간

○ 신청 연구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정 공고기간 확보

○ 연구팀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및 지방정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

※ 다만, 전문기관에서 별도로 안내한 기한 내 연구팀 선정평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고·접수·평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추진일정 수립

□ 공고문 필수 포함사항

○ 지방정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RFP를 첨부하여 공개모집 공고 실시

○ 공고문에는 연구팀 모집·선정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

- 공고문은 [별첨 3]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❸ 신청서류 접수

□ 접수방법

○ 지방정부가 공고문에서 정한 접수방법에 따라 신청서류 접수

○ 전자우편, 전자문서 또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접수시스템 등을 활용한 신청서류 접수

○ 신청서류 접수 시 접수일시, 신청기관명, 연구책임자 및 제출서류 목록 등 관리

□ 신청 시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별첨 서류

* 관련 서식은 [별첨 4]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확인자료

○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확인자료

❹ 접수 마감 및 신청서류 확인

□ 접수 마감 및 서류 확인

○ 공고문에 명시된 접수 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신청서류 접수 종료

○ 신청서류의 제출 여부, 기재사항 누락 및 증빙자료 적정성 확인

Ⅳ 연구 컨소시엄 선정평가

□ 선정평가 기본원칙

○ 지방정부는 해당 RFP의 연구개발 목표·내용 및 연구팀 구성요건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적합한 연구팀 선정

○ 연구팀 선정평가 방법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은 지방정부의 자체 기준과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다만,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신청자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등 필수 요건에 대한 적정성 확인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검토

○ 신청 연구팀의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충족 여부 확인

○ 해당 RFP에서 정하는 연구팀 구성요건 및 산업체 필수 참여 여부 확인

○ NTIS 및 IRIS(NRI)를 통해 제출된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 5공) 확인자료 검토

○ 영리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 신청 제한사항 확인

○ 신청자격 미충족 또는 참여제한 등 부적격 사유가 확인된 연구팀의 선정 제외

□ 선정평가 운영

○ **(평가방법)**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및 지방정부 여건 등을 고려한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 자율 운영

- 서면·발표평가 등 평가방식,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기준 등 자체 결정

 * 단,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필수 요건 확인

○ **(공정성 확보)** 사전에 정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른 선정평가 실시

Ⅴ 연구팀 선정 및 후속절차

❶ 연구팀 선정 및 결과 관리

□ 선정결과 확정 및 통보

○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적합한 연구팀 선정

○ 선정결과 확정 후 해당 연구팀에 결과 통보 및 후속 추진절차 안내

□ 선정 관련 자료관리

○ 연구팀 공개모집 공고문, 신청서류, 신청자격·참여제한 검토자료 및 선정평가 결과 등 관련 증빙자료 보관

○ 전문기관 요청 시 연구팀 모집·선정 절차 및 결과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❷ 후속 추진절차

□ 참여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 지방정부는 연구팀 선정 후 과제 수행 필요성, 컨소시엄 구성 및 선정절차,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서' 및 '지방비 매칭 확약서' 제출

* 관련 서식은 [붙임 3, 4] 참고

Ⅵ 관련 규정 및 기타사항

□ 관련 규정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등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 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⑥ 제안한 연구개발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⑦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사업 참여 공무원의 겸직허가 신고 안내

○ 연구개발사업 참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 필요